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9
----------	-----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5.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19. 7. 19.)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자: 안전교통국장 이 철)

-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금액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항)

나.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2)

다.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19. 4. 26.~ '19. 5.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이하 “법”이라 함)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안 제4조(지원기준)제1항제4호, 제3항, 제4항의 장례비, 치료비 지원규정은 이를 별도로 명문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통상적 비용에 대한 설명(그간 支給例 또는 다른 자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체 支給例)이 필요해 보임.

한편, 제3항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조의2(지원금액등의 구상) 및 안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은 법 제66조제6항2)에 따른 사항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안 제10조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답 변: 사회재난구호 기금을 마련하고 있음
- 질 의: 안 제4조제3항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통상적 비용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 답 변: 장례비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이며, 치료비는 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을 말하며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질 의: 생활안정 지원 금액의 선정 기준은
- 답 변: 심의를 거쳐서 확정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김세준 의원으로부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4조 제3항 중 “같이 할 수 있다” 를 “같다” 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59호

발의일자 : 2019. 07. 19.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안 제4조제3항, 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같이 할 수 있다”를 “같다”로 한다.

안 제8조 중 “생활안정지원등으로”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로, “금융회사등”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p> <p>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_통상적 비용</p> <p>2. 치료비 : 재난으로</p>	<p>제4조(지원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9
----------	-----

제출년월일 : 2019. 7.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재난안전과

1. 제안이유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구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기준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금액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4항)
- 나.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2)
- 다.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60조,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제73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19. 4. 26. ~ '19. 5.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각각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금융회사등을”을 “금융회사 등을”로 한다.

제9조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 </p> <p><u><신설></u></p> <p> </p> <p><u><신설></u></p>	<p>제4조(지원기준) ①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u></p> <p>1. <u>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p> <p>2. <u>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p> <p>④ <u>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u>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u></p>

<신 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을 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 “생활안정지원 등” ----- .

② 생활안정지원 등-----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생활안정지원 등-----.

제8조(지급방법) -----

----- 금융회
사 등을 -----
-----.

-----.

제9조(환수) -----
생활안정지원 등-----

-----.